

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번호	333
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8. 30.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24년도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출석기간 및 장소

-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기간 내

나. 출석 장소

- 성북구의회

다. 출석 공무원의 범위

- 성북구청장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에 의한 부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·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

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1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

1. 출석 일자

-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기간 내

2. 출석 장소

- 성북구의회

3. 출석 대상자

- 성북구청장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에 의한 부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·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

4. 출석 요구사유

-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함.